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긴급지원대상자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 추가 등 〉
■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09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긴급지원대상자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 추가	2

I. 개요

1.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09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4. 24.
- (3) 회 부 일 : 2025. 4.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긴급지원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에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고 지인 등의 신용카드를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 위기상황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גיע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긴급지원대상자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제2조제2호의 사유(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을 긴급지원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 단서 신설),

개정안은 의료지원의 내용을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에 더하여 의료비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항 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 ----- ----- ----- ----- ----- 다만, 제2조제2호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을 긴급지원대상자에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략)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u>의료서비스 지원</u> 다. ~ 바. (생략) 2. (생략) ②·③ (생략)	<u>포함할 수 있다.</u>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u>의료서비스</u> 또는 <u>의료비 지원</u> 다. ~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긴급지원대상자’로 규정¹⁾하면서,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제2조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및 긴급지원의 종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는 위기상황으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²⁾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2조2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료지원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³⁾,

이러한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침 등을 통해 퇴원 전에 긴급지원 요청⁴⁾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미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 의료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을 벗어난 상태로 판단하고 있음.

2)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3)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②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

4) 「2025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p.49 ‘의료지원’의 지원방법 및 절차: (원칙)퇴원 전 요청(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지원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지원 가능)

□ 그러나,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에 지인 등의 신용카드를 의료비를 대납하고 퇴원한 경우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위기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의 내용에 의료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גיע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지원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퇴원 전에 긴급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였다가 사후에 신청한 경우에 긴급지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⁵⁾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의료비를 선납하고 퇴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비 지불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의료비 지불 능력이 충분한 경우라면 사후 신청을 인정하더라도 당연히 긴급지원대상자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30일이라는 일정한 기간으로 위기상황의 범위를 제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되, 진단서 등 서류와 의료기관 확인 등을 통해 긴급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긴급지원의 목적 및 기본원칙에 크게 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5)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다만, 퇴원 후에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의료비용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⁶⁾

즉, 긴급지원제도는 시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려는 제도라는 점에서, 퇴원 후에도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에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조금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예산의 중복을 방지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퇴원 전에는 긴급지원제도를 통하여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퇴원 후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소득기준 등에 있어서 긴급지원제도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최대 지원금액이 연간 5천만원 범위에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80%라는 점에서, 3백만원 이내로 지원되는 긴급지원 제도에 비해 장단점이 있음.

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

구분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중한 질병(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	모든 질환														
지원 횟수	- 동일상병에 1회 지원 * 위기상황 미해소시 1회 추가연장 가능 * 동일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에 대해 지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794,010원, 4인기준 4,573,330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개별심사 후 지원 결정														
재산 기준	- 재산: 대도시(241~310백만원), 중소도시(152~194백만원), 농어촌(130~16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해당금액(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이하 <table><tr><td>가구</td><td>1인</td><td>2인</td><td>3인</td><td>4인</td><td>5인</td><td>6인</td></tr><tr><td>금액(천원)</td><td>8,392</td><td>9,932</td><td>11,025</td><td>12,097</td><td>13,108</td><td>14,064</td></tr></table>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천원)	8,392	9,932	11,025	12,097	13,108	14,064	재산 : 과표 7억원 이하 가구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천원)	8,392	9,932	11,025	12,097	13,108	14,064										
지원 금액	3백만원 이내	- 연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비급여, 선별급여 등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50%~80%* 지원 (지원제외항목 제외) *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이하 : 60%, ▲ 중위소득 100~200% 이하 : 50%														
지원 범위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항목 상급 병실료 제외	-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액 ※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는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지원 절차	(요청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 (요청기한) 퇴원 전 긴급의료지원 요청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가 원칙이나 입원 중인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퇴원일 3일 전까지 신청														

자료: 보건복지부, 2025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p.53

□ 한편, 법 제9조제2항⁷⁾에서는 긴급지원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⁸⁾하고 있는데,

퇴원 전에 긴급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 제3조제1항⁹⁾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원 후 30일 이내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제3조제1항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 또는 지침의 개정을 통해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9)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퇴원하였다는 것은 이미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아 중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퇴원 후 지원은 긴급지원 취지·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긴급의료지원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이고, 퇴원후 지원이 가능한 타 제도(재난적의료비지원 등)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경기도*)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입원 중 지원조건에 해당될 때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퇴원 후 30일 이내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퇴원 후 지원 가능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등의 의료비지원제도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 경기 양주시, 수원시

- (전라남도*) 의료비를 선납하고 퇴원한 경우는, 이미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긴급하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의료지원제도에서 퇴원 후 지원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움. 개정안 도입보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입원 중” 사전에 안내 및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료기관 단계에서의 적극적 사전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전남 나주시, 해남군

문 의 처
02)6788-5497